



BRITANNIA P&I GUIDE

제3자에 대한 담보

방선 또는 동승항해

개요

항구 또는 묘박지에 정박중인 선박을 방문하거나 선박 항해에 동승하는 제3자에 대한 Club의 담보에 관하여 Member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서 Member는, 이와 같이 승선중인 제3자에 대해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다면, 제3자에 대한 Member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그러한 제3자가 선박에 승선중 (또는 승선중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극단적으로 사망할 때, Club이 Member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요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내서가

Club의 Rules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특정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Club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담보 방선 또는 동승항해

RULE 19(4) 제3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

제3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Britannia Class 3 Rules의 Rule 19(4)에 따라 담보됩니다:-

선원 또는 승객 이외의 사람의 질병,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 Member가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그리고 해당 질병,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Rule 19(6)에 명시된 이로 비용.

단, 항상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i) 본 Rule 19(4)에 따른 담보는, 선내에서 부주위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하거나, 가입선박의 운항 또는 선적항에서 해당 화물의 수령 시점부터 양하항에서 해당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해당 화물 취급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ii) Member는 그러한 제3자와 관련된 다른 개인 또는 보험자에게 청구 및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iii) 다음의 경우에는 Rule 19(4) 하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a) Club의 Manager가 가입선박에 제3자(선원의 친인척인 경우는 제외)의 동승항해 및 이에 대한 조건을 승인하지 않거나, Member가 Club에서 부과하는 추가 보험료를 Member 지불 또는 지불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유류나 가스 생산 또는 탐사를 위해 고용된 Member 이외의 인원(해무 목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제외)이 승선하여 가입선박에서 그 인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면, 그 인원의 고용주와 Member 간의 계약적 위험 배분에 대해 Club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가입선박이 정박(임시적인 경우는 제외)하여 대중에게 호텔, 식당, 술집 또는 기타 접대 장소로 개방한 경우에 승선한 손님, 방문객 및 음식공급 직원

누가 제3자인가?

“제3자” 용어*

- 해무 감독, 보통 Member의 육상근무자로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 Member의 기타 육상근무 피고용자
- 선원의 친인척,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 유지보수 직원
- 항만당국 및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 실무자
- 통상 용선자를 위해 고용된 화물 감독
- 매각 예정인 가입선박에 승선한 구매자의 선원
- 선주, 운항자 또는 용선자의 공식 또는 비공식 내빈
- 학생 또는 (선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실습생.

Rule 19(4)는, Rule 19(1) 하에서 담보되는 선원 또는 Rule 19(2) 하에서 담보되는 승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Rules에서 선원은 “계약 조항에 따라 종사하거나, 가입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계약적 의무가 있는 사람(선장 포함)으로, 그러한 사람의 대체자 및 그 선박으로 또는 그 선박으로부터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됩니다. “승객”은 “통행권을 소지하여 가입선박에 승선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특정지역에서의 해적위험 때문에, 보안요원(통상 무장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음)이 종종 Member의 가입선박에 승선합니다. 보안(경비)계약은 Member의 클레임팀에서 검토되고 (일반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BIMCO GUARDCON에 기초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Rule 19(4)에 따라 보안요원에 관한 선주의 법적책임에 대한 담보가 통상적으로 확장되지만,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하는 부상과 같이 선주의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담보되며, 해적과의 충격전으로 발생한 무장요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도선사, 하역인부(통상적이고 운항/운영에 일부이므로 Club에 통보할 필요는 없음), 세관원 및 (Member의 명시적인 승인을 조건으로) 클레임 조사의 일환으로 승선한 검정인 또는 변호사도 제3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고 단지 제3자로 분류되는 승선자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 “Supernumeraries” 라고도 언급되나, 본 용어는 더 이상 Club의 Rules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 담보되는가?

아래의 책임에 대해 담보합니다:

- 제3자의 질병,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 Member가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 이러한 질병,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병원, 의료 또는 장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

단, 항상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담보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
- 승선중
- 또는 가입선박과 관련하여
- 또는 선적항에서 화물을 수령한 시점부터 양하항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따라서, Rule 19(4)에서는 Member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규정 또는 법적 요건 위반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담보를 때때로 “Slip and Trip” 담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컨대 Member가 안전하게 해놓지 않은 일부 기름진 계단에서 제3자가 미끄러지거나, 제3자가 가서는 안 되거나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담보는 가입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가입선박에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담보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3자가 가입선박에 승선했을 경우에만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두 줄잡이가 선박에서 부주의하게 던져진 계선줄에 맞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도선사 사다리에 있는 동안 선박의 갑작스러운 조종으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제3자가 승선했 있지만, 작위 또는 부작위는 본선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Rule 19(4)에 따른 본 담보는, 선원이 자택을 떠나는 시점부터 자택에 돌아올 때까지 담보되는 Rule 19(1)(선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선원에 대한 Club의 담보와 개념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방선 또는 동승항해를 언제 Club에 통보해야 하는가?

만약 제3자가 동승항해하는 경우 - 즉, 짧은 시간이라도 항해하는 경우 - 담보는 Club의 사전 통보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선원의 친인척은 제외되므로, Club에 승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에 제3자가 단순히 승선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3자가 승선하고 있는 동안 Member는 여전히 Rule 19(4)에 따른 담보를 받습니다. 만약 선박 운항의 통상적인 과정이 아닌 여하한 이유로 승선하는 사람이 있다면, Member는 Club에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례

사례 1

Member의 육상 감독이 선박의 정기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을 위해 Member의 가입선박에 승선하여 싱가포르에서 호주까지 항해합니다. (감독이 동승항해를 하기 때문에) Club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Club은 Rule 19(4)(제3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에 따라, 통상적으로 추가보험료 없이, 승선 일자부터 하선할 때까지 감독에 대한 선주의 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Rule 19(4) 하에서 보험금 청구권은, Member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한정됩니다. Member가 육상 감독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책임 그리고/또는 계약책임은 Club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Member가 제3자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Rule 20(9)(고용주 책임)에 따라 담보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Rule 19(4)에 따라 선주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Member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제3자는 선박을 왕래하고 승선하는 동안에 질병/사고/손실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보험이나 여행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lub은 선박의 가입증서에 (가입증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배서를 발행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Club의 담보가 확장됨을 확인합니다.

사례 2

감독이 정박중인 선박에 단지 방문만 한다면, (감독이 동승항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Club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Member는 자동적으로 Rule 19(4)에 따라 정박중인 선박에 승선했던 감독에 대한 선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담보를 받습니다.

사례 3

만약 선박 운항의 통상적인 과정이 아닌 여하한 이유로 정박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이 있다면, Member는 Club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선박을 사용하거나 군인이 훈련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정박중인 선박에 대규모 그룹의 VIP 또는 학생의 방문은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Club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특히 대규모 그룹으로, 미국과 같은 소송이 흔한 관할지역에서 방선하거나, 기타 관할지역에서 방선하는 제3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Club에 통보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위험을 산정하여 필요 시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4

Member의 가입선박 선원의 아내와 자녀가 동승항해를 하기도 합니다.(또는 장기간 승선하여 체류하기도 합니다) 선원의 친인척은 통상의 통보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Rule 19(4)(ii)의 Sub-Paragraph (a) 참조) Club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Member는 자동적으로 Rule 19(4)에 따라 정박중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친인척에 대한 선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담보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리자면, 선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Rule 19(4)에 따라 선주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Member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정하므로, 선원의 친인척, 특히 자녀의 경우, 선박을 왕래하고 승선하는 동안에 질병/사고/손실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보험이나 여행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선한 어린이가 Member의 과실과 전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면, (예컨대, 편도선염과 같이 일반적이지만 심각한 소아질병) 이로 발생한 여하한 비용은 제3자의 의료보험이나 여행보험에서 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승항해를 허용하는 자녀의 최소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픈 어린이와 그 질병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응급치료를 위해 선박이 이로해야 하는지를 본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Member는 약 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승항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Rule 19(4) 하에서의 담보는 제3자에게 응급치료를 제공해야 할 도의적 또는 법적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Member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면 Rule 19(4)에 따라 비용은 담보될 수 있는 반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의 응급치료를 위해 선박이 이로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Member의 이로 비용(근본적으로, 추가 연료 소모와 같이, 이로나 지연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대한 Member의 손손실)은 Rule 19(6)(이로 비용)에 따라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ember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제3자/제3자의 보험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조치

제3자가 승선중에 안전하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ember는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Member는, 선원에 대한 STCW 국제협약, STCW 코드 및/또는 ISM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문객을 위한 안전 숙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3자는 승선하는 즉시, 지정되고 자격을 갖춘 선원이 실시하는 안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금지 또는 위험구역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감독을 받고 적절한 의류와 신발을 제공받아야 합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제3자의 세부 정보가 기록되는 승선전 체크리스트는, 제3자가 관련 비자 및 건강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제 3자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보험 또는 여행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자 일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선원의 친인척을 포함하여 제3자가 승선하는 즉시 LOI(Letter of Indemnity)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ule 19(4)에 따른 담보에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Member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lub은 요청에 따라 적절한 LOI 문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britanniacommunications@tindallriley.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